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언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01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3
2. 국내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11

I. 개요

1. 이언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570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언주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2. 29.

(3) 회 부 일 : 2025. 12.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부동산에 편중된 국민 가계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유입된 자금이 자본시장 내에서 머물면서 장기간 투자되어 가계자금을 늘려나갈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개인 직접 투자의 경우 종목선정과 자산배분 및 위기 대처 능력 등에서 전문가가 운영하는 펀드 등에 비해 그 역량이 부족할 수 있어 장기투자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펀드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더욱이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위하여는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여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신설하고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소득공제 및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고자 함(안 제91조의26부터 제91조의29까지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이언주의원안)

현행	개정안												
<신설>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 ○ 가입대상 : -19세 이상인 자 -15세 이상으로 근로소득 있는 자 * “일반투자형 ISA”와 달리 “국내투자형 ISA”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가입 허용 ○ 특례내용 ① 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table><tr><td> 소득액 대상 </td><td>200만원 이하</td><td>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td><td>400만원 초과</td></tr><tr><td>소득 요건 충족 거주자* 및 농어민</td><td colspan="2">비과세</td><td>5% 분리과세</td></tr><tr><td>일반</td><td>비과세</td><td colspan="2">5% 분리과세</td></tr></table> *총 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② 세액공제 - 과세연도 납입금액의 1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납입한도 : 연 3천만원(이월허용), 총 한도 3억원 ○ 의무가입기간 : 3년 ○ 계좌의 운용재산 -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60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의 집합투자증권 - 상장법인의 주식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소득액 대상	200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400만원 초과	소득 요건 충족 거주자* 및 농어민	비과세		5% 분리과세	일반	비과세	5% 분리과세	
소득액 대상	200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400만원 초과										
소득 요건 충족 거주자* 및 농어민	비과세		5% 분리과세										
일반	비과세	5% 분리과세											

□ 개정안은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 상장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고 있는 국내주식형 펀드를 운용자산으로 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국내투자형 ISA”) 제도를 신설하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특례내용은 ①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일반 투자자의 경우 200만원까지, 소득 요건 충족 거주자¹⁾ 및 농어민²⁾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며, 비과세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② 해당 과세연도 납입금액의 1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데, 납입한도는 연 3천만원(총 3억원)임.

추가로, 현행법상 일반 ISA 가입이 제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 이하 “ISA”)는 가입자가 예·적금이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한 금융상품으로서, 소득 요건 충족 거주자에 대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출시되었음.

ISA는 중개형ISA, 신탁형ISA, 일임형ISA 등 3가지 종류로 구분³⁾

1) 총 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2)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3)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2. 계좌의 명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되는데, 중개형ISA와 신탁형ISA는 가입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세 유형 모두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는 것은 아니며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방식임.

[ISA의 종류]

구 분	중개형ISA	신탁형ISA	일임형ISA
투자가능재산	국내상장주식, 채권 등	예금, ETF, 펀드, 등	ETF, 펀드 등
투자선택여부	가입자가 직접 투자상품 선택		증권사가 포트폴리오운용
투자방법	간접투자		

□ 제도 도입 시기인 2016년부터 ISA 가입의 활성화를 위해 14%의 세율⁴⁾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도입하였는데,

제도 도입 당시 비과세 한도는 소득 요건 충족 거주자가 250만원, 그 밖의 가입자는 200만원이었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로 분리과세하도록 하였음.

이후 2017년 세법 개정으로 소득 요건 충족 거주자·농어민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2020년 세법 개정으로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19세 이상인 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

4) 2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며, 이를 초과한 경우 6%~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

제도가 확대되었고,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제도가 영구화되었음.

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도 출범 이후 지금까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음.

[ISA 제도 및 과세특례 연혁]

구 분	2015년 개정	2017년 개정	2020년 개정
가입대상	19세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자		19세이상인 자
비과세한도	소득 요건 충족 거주자 250만원 기타 200만원	소득 요건 충족 거주자·농어민 400만원 기타 200만원	
일몰기한	~2018년	~2021년	제도 영구화

*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ISA는 손익의 통산 및 기간의 통산이라는 특별한 장점을 갖고 있음. 손익의 통산이란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과 과세 대상 금융상품의 손실이 통산되는 것을 말하며, 기간의 통산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일·계약 해지일에 징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이와 같은 장점에 더해 2021년 중개형 ISA의 도입으로 주식, ETF, 리츠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ISA 가입자 수 및 가입금액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2025년 12월 기준 가입자 수는 765만명, 가입금액은 48조원에 달함.

[연도별 ISA 가입자 수 및 가입금액 현황]

(단위: 만좌, 조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가입자수	239.1	212.0	215.4	207.7	193.9	342.3	463.0	493.2	598.5	765.2
가입금액	3.4	4.2	5.6	6.3	6.4	12.9	18.6	23.5	32.9	48.4

□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고액 자산가의 국내 주식시장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인 고액 자산가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45%의 한계세율을 적용받는데, 국내투자형 ISA에 가입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 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므로 개정안의 국내투자형 ISA에 가입할 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둘째,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자금공급에 기여할 수 있음.

의무가입기간인 3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ISA 계좌의 조건을 감안할 때, ISA에 유입된 자금은 최소 3년 동안 국내 자본시장 투입자금으로서 기능할 것이므로 국내 증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셋째, 세액공제 혜택의 추가 부여는 국민 자산형성 지원기능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음.

세액공제 혜택은 ISA를 통한 투자유인을 증가시켜 동 정책금융상품을 통한 국민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것이 기대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은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소득세법」은 응능부담 원칙의 구현을 통한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원칙적⁵⁾으로 합산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6%에서 최대 45%의 세율로 누진적으로 종합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본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았을

5)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을 퇴직 등 특정 시점에 일괄적으로 과세할 경우 세부담이 급증하는 결집효과(結集效果)를 방지하기 위해 분류과세 하는 것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가입을 허용하여 최대 3억원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의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함에 따라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둘째, 납입한도가 인당 3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점 및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라는 점 역시 소득계층 간 과세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2025년 12월 기준 ISA에 가입한 1계좌당 평균 투자금액은 632만원이고, 누적 투자금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좌의 수는 약 5만계좌로 전체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ISA 가입자 및 투자현황]

(2025. 12월말 기준)

구 분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합 계
가입계좌(만좌, A)	92.0	13.9	659.2	765.2
전체 투자금액(억원, B)	152,666	13,087	317,938	483,691
1계좌당 투자금액(만원, B/A)	1,659	944	482	632

자료: 금융투자협회

[투자금액 수준별 인원]

(2025. 12월말 기준)

구 분	계좌수(만좌)	비중
1만원 이하	4,221	55.2%
1만원 ~ 10만원	337	4.4%
10만원 ~ 3백만원	974	12.7%
3백만원 ~ 5백만원	237	3.1%
5백만원 ~ 1천만원	382	5.0%
1천만원 ~ 2천만원	818	10.7%
2천만원 ~ 4천만원	421	5.5%
4천만원 ~ 6천만원	146	1.9%
6천만원 ~ 8천만원	64	0.8%
8천만원 초과	51	0.7%
합계	7,652	100.0%

자료: 금융투자협회

이러한 ISA 평균 투자금액을 고려할 때, 납입한도 인당 3억원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높은 가입 한도에 따른 세제 혜택이 자금 여력이 있는 일부 고소득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개정안은 동 펀드 가입 이후 3년 전에 양도나 환매·일부환매를 하는 경우 감면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무투자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경우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고 장기투자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저소득층의 경우 가입 유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

2. 국내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이언주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국내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대상: 자산의 60% 국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거주자 ○ 특례내용 ① 소득공제: 투자금액에 따라 누진공제율을 적용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투자금액</th><th>공제율</th></tr> </thead> <tbody> <tr> <td>3천만원 이하</td><td>총 금액의 100분의 30</td></tr> <tr> <td>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td><td>900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td></tr> <tr> <td>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d><td>1,300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td></tr> </tbody> </table>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 ②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9% ○ 의무가입기간 : 3년 ○ 납입한도: 3억원 ○ 적용기한: 2029년 12월 31일	투자금액	공제율	3천만원 이하	총 금액의 100분의 3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900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300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투자금액	공제율								
3천만원 이하	총 금액의 100분의 3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900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300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개정안은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상장기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거주자에게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경우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2천만원 초과인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합산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6%에서 최대 45%의 세율로 누진적으로 종합과세를 하고 있음.

-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가계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고, 유입된 자금이 자본시장 내에서 머물면서 장기간 투자되며, 투자로 이루어낸 성과는 배당을 통해 다시 가계자금으로 유입되는 자본의 선순환 체계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에 편중된 국민 가계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어야 하나, 개인 직접 투자의 경우 종목 선정과 자산 배분 및 위기 대처능력 등에서 전문가가 운영하는 펀드 등에 비해 한계가 있는 실정임.

- 이에 개정안은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국내주식형 펀드”라 함)에 대한 소득공제 및 저율 분리과세를 통해 전문가에 의해 운영되는 간접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전문화된 투자를 통한 장기 투자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아래와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① 거주자별 투자 한도를 3억원으로 설정하고 ② 공

제한도를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설정하며 ③ 배당소득에 9%의 저율 분리과세를 허용함에 따라,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어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이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보다 세액 감면 효과가 큰 측면이 있음. 개정안의 투자 한도 및 공제 한도는 자금 동원력을 가지고 소득 규모가 큰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배당소득 저율(9%) 분리과세 또한 고소득자의 종합소득 최고세율⁶⁾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세율로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고소득층에 세제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음.

둘째, 주식·채권·벤처투자 등 투자 대상 간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개정안은 세제 혜택의 대상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제한하고 있는데, 채권형 펀드 및 기타 혼합형 상품 등은 세제 혜택 대상에서 배제되어 투자 대상 간 형평성이

6)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한계세율
~1,400만원	6%
1,400만원 ~ 5,000만원	15%
5,0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5억원	35%
1.5억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 10억원	42%
10억원 ~	45%

저해될 수 있음.

또한, 국내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시 기존에 정부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과세특례를 부여한 벤처투자조합 출자⁷⁾, 개인투자용국채⁸⁾ 등 다른 투자 대상의 투자 유인이 저해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0

7)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국채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를 매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 개인투자용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1명당 1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좌일 것

2.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에만 사용되는 계좌일 것

②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금액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운용·관리방법 및 그 밖에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